

2020년 국가대표 임원 선발 공고

1. 선발근거

； 관련근거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4장 지도자」

2. 선발인원 : 7명

- 코치 00명
- 트레이너 00명
- 보조트레이너 00명

※ 대상자 없을 경우 직무대행 운영하며, 보조의 경우 추후 추가 확충

3. 선발 대상

가. 관련근거 대한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16조」

제16조(국가대표지도자 선발) ①국가대표지도자(감독, 코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1. 감독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코치의 경우 5년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코치의 경우 2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해당 종목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패럴림픽대회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3.7.>
3. 장애인종목 가맹단체에서 발급한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종목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한 장애인 특수종목의 경우, 제16조 ①항 2호, 3호에 의거 종목별 가맹단체장의 추천에 의거 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한다.

③감독, 코치 이외에 보조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패럴림픽대회(농아인올림픽 포함),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농아인아시아경기대회 포함), 유형별종합대회 등 종합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지도자(감독에 한함)는 해당 가맹단체의 추천에 의하되, 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단 패럴림픽대회의 경우 대회 대비 훈련 개시 최소 3개월 전에 국가대표지도자(감독에 한함)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3.7.>

⑤국가대표지도자(감독, 코치 및 보조지도자를 모두 포함)는 최종 선발 당시까지 성폭력관련 범죄경력(징계경력을 포함)이 없는 자이어야 하고 최종 선발된 이후 장애인체육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후 7일 이내 이수확인서를 해당 가맹단체(또는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선발대상

구분	수당	인원	주요내용
코치	120,000원/1일	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16조에 의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럭비) 자격 소지자 - 휠체어럭비 지도자 자격증 (대한장애인럭비협회 발행) - 기타 지도사 자격증 (휠체어럭비)
트레이너	100,000원/1일	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레이너 및 물리치료사 자격 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레이너 관련 자격 소지자 - 물리치료사 (국가공인)
보조 트레이너	50,000원/1일	3~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럭비 관련 자격 소지자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판, 지도자, 등급분류사등

※ 수당 내에 교통비 포함되며, 세금공제 후 지급. (식비 숙박비의 경우 별도)

4. 선발 일정

일자	내용	비고
2020. 8. 5.(수) ~8. 11.(화)	• 모집 공고	
2020. 8. 12.(수)	• 서류 전형 검토	
2020. 8. 13.(목)	• 면접 및 운영발표	
2020. 8. 14.(금)	• 합격 통보	

※ 상기 일정은 협회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음.

5. 접수 및 제출서류

구분	자격기준	비고
접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reawheelrug@hanmail.net 「2020년 국가대표_○○○」으로 발송 • 직접 접수 (접수처 참고) 	
접수처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24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1층 104호 대한장애인럭비협회 국가대표 선발 담당자 앞)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에 기재한 경력, 자격 등은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자율 형식)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군 전역사항 포함) • 2020년 국가대표 운영계획서 1부 (감독, 코치) • 경력증명서 각 1부 • 자격증 사본 각 1부 • PPT 발표 1부 (감독, 코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2020코로나 대응 훈련방안, 2020-2022 중장기 계획(안) 	

※ 면접 및 발표 일정은 합격자에 의해 개별 통지 예정

6. 결격대상

○ 관련근거 대한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19.6.19.>
2.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개정 '19.6.19.>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개정 '19.6.19.>
 -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19.6.19.>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신설 '19.6.19.>
6.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7. 가맹단체(시도지부 포함)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

7. 기타(유의사항)

-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최종합격자가 자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 신원조사에서 부적격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으며,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이력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이력서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장애인럭비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447-3717 / 김희수 과장)

대한장애인럭비협회